

# 감 사 보 고 서

- 2022년 강원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

2023. 1.

중 소 벤 처 기 업 부  
감 사 관 실

I. 감사실시 개요 .....	1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재무(수입)현황 .....	2
III.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3
1.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개인주의) .....	3
2. 구상권 소송에 따른 손해금 산정 부적정(기관경고) .....	6
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개인주의) .....	9
4.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개인주의) .....	12
5. 출장비 지급 부적정(시정요구) .....	14
6.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부적정(개인경고) .....	17
7.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시정요구) .....	20
8. 보증승인 업무처리 부적정(기관주의) .....	24

9. 제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미흡(개인주의) .....	27
10.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 관리 소홀(시정요구) .....	29
11. 배당금 지연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시정요구) .....	33
12. 보증기한연장 관련 보증료 산정 부적정(시정요구) .....	38
<b>IV. 처분 요약 .....</b>	<b>41</b>

## I.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주기능 수행, 조직운영·복무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주기능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로 회계·계약·복무 등 기관운영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보증 및 채권 관리 등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 3. 감사실시 과정

우선 실지감사에 앞서 2022. 10. 1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10. 31.부터 11. 8.까지 7일간 감사인원 5명(산하 공공기관 4명 포함)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4. 감사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2. 12. 21.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 1. 일반 현황

강원신용보증재단<sup>1)</sup>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보증기관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역 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출연금으로 재단 기본재산을 조성 또는 확충하고 있고, 이를 보증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중심으로 시설대여 보증, 이행 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22년 10월 말 기준 현원 총 77명(정원: 77명)이 근무하고 있다.

### 2. 재무(수입)현황

강원신용보증재단의 2021년 전체 수입액은 964억 원이고, 주요 수입원은 [표 1] 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강원도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609억 원(중앙정부 35억 원, 지방자치단체 454억 원, 금융기관 12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63.2%)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액, 재보증 보전금, 여유자금 운용이자 등이 있다.

< [표 1] 재무(수입) 현황 >

(단위: 천 원)

연도	전체수입	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채권 회수액	재보증 보전금	여유자금 운용이자
		중앙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2020년	58,274,001	4,281,270	1,576,500	11,788,274	20,406,297	6,920,326	9,523,499	3,777,835
2021년	96,418,802	3,467,246	45,400,000	12,137,943	15,809,974	6,733,073	9,647,837	3,222,729

자료: 강원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조직구성: 2본부(경영관리본부, 보증지원본부) 4부(감사부, 경영지원부, 보증지원부, 재기지원부), 1팀(전략기획팀), 7지점(춘천·원주·강릉·속초·태백·동해·홍천)

## III. 감사결과

### III-1

### 기본재산 운용 부적정

####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라고 한다.)은 「기본재산운용기준」 등에 따라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기본재산 현황은 아래 [표 2] 와 같다.

< [표 2] 기본재산 현황 >

(단위: 천 원)

연도	정부출연금	지자체출연금	금융회사출연금	합계
2017년	-	3,800	6,479,603	6,483,403
2018년	-	300,000	5,843,060	6,143,060
2019년	-	-	8,973,476	8,973,476
2020년	4,281,270	1,576,500	11,788,274	17,646,044
2021년	3,467,246	45,400,000	12,137,943	61,005,189
2022.9월	2,248,478	6,900,000	10,963,414	20,111,892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2. 법령 등 관련 근거

「기본재산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재단기여도를 분석하여 기여도가 높은 상위 5개 금융회사로부터 금리를 제시받아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같은 기준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단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기본재산 예치 시 아래 [표 3] 와 같이 강원지역 內 재단기여도<sup>2)</sup>가 높은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금리를 제시받아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 < [표 3] 금융기관별 재단기여도 순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강원재단 「운용기준」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단기여도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단기여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기본재산을 예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경영지원부 AAA AA<sup>3)</sup>은 2018년 5월 2일 정기예금 만기도래분 5,500,000,000원을 예치하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금리(BB은행: 1.92%, CC은행: 2.06%, DD은행: 2.06%, EE은행: 2.00%)를 제시받았고, 이 중 2개 금융기관(CC은행, DD은행)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바, 「운용기준」에 따라 재단기여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CC은행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사

유 없이 기본재산 5,500,000,000원 모두를 CC은행보다 재단기여도 순위가 낮은 DD은행에 예치하는 등 「운용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재산을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강원재단은 앞으로 「운용기준」 등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업무관련자인 AAA AA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운용기준」 등을 준수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예치한 업무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AAA AA (주의)

2) 강원재단은 매년 1월경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출연실적, 보증공급실적 등 4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은행을 선정하고 선정된 은행 등으로부터 금리를 제시 받음

3) AAA AA 경영지원부 근무기간('18.1.1. ~ '20.6.30.) / 現 a부 a으로 근무 중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 한다.)은 「구상권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위변제<sup>4)</sup> 후 강제집행<sup>5)</sup>이나 소멸시효<sup>6)</sup> 연장을 위해 법원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금<sup>7)</sup> 등에 대해서는 소송상대방(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 「소송업무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상대방(채무자)에게 손해금을 청구할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재단이자율(8%)을,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특례법”이라 한다.)상 이자율(12%)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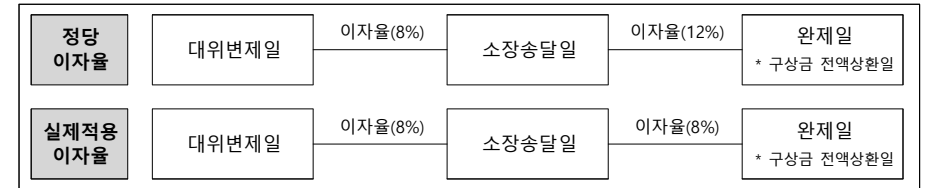
강원재단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채무불이행 채무자를 상대로 총 3,374건<sup>8)</sup>의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중 53건은 구상금액이 전액 상환되었다.

강원재단 「처리기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손해금 등을 청구할 때에는 대위변제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재단이자율(8%)을 적용하되,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특례법」상 이자율(1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낮게 적용하여 손해금을 산정·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위변제) 보증사고 발생 시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를 갚아주는 것  
 5) 강제집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6)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정기간(5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7) 손해금 = 재판확정금액(채무자가 재단에 갚아야할 채무) × 지연일수(소송일수 포함) × 이자율  
 8) 구상채권: 2,045건, 완제(감면포함): 302건, 감면대상 특수채권: 498건, 매각: 461건, 소각: 68건

그런데 강원재단은 아래 [그림 1] 와 같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발생한 손해금을 산정할 때에는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임의로 8%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손해금을 산정·청구하고 있었다.<sup>9)</sup>

< [그림 1] 구상권 소송에 따른 손해금 산정 구간별 이자율 비교 >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위 53건에 대해 이자율 적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강원재단은 위 기간 동안 손해금으로 총 90,381,653원을 청구하였고, 이 중 27,610,298원(대위변제일~소장송달일)은 재단이자율(8%)을 정당하게 적용한 반면, 나머지 62,771,355원(소장송달일 다음날~완제일)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2] 와 같이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보다 낮은 8%의 이자율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손해금을 산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2]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사이의 정당·실제 손해금 산정방식 >

구분	손해금 <sup>10)</sup>	손해금 산정방식
정당 손해금	85,406,759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금산정 기초금액(780,721,960원)</li> <li>* 손해금 = 손해금산정 기초금액 × 이자율(12%) × 경과일수/365</li> </ul>
실제적용 손해금	62,771,355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금산정 기초금액(780,721,960원)</li> <li>* 손해금 = 손해금산정 기초금액 × 이자율(8%) × 경과일수/365</li> </ul>

자료 :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9) QQ:WW:EE재단 등 타 재단을 확인해 본 결과, 소장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손해금의 경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10) 위 손해금은 「소송특례법」상 연도별 변동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특례법 이자율: '15.9월까지(20%), '15.10월~'19.5월(15%), '19.6월부터(12%)</li> <li>■ 재단이자율: '18.2월까지(12%), '18.3월~'21.12월(10%), '22.1월부터(8%)</li> </ul>
---

그 결과 「처리기준」 등에 따른 정당 손해금인 85,406,759원 보다 22,635,404원을 적게 청구하여 강원재단에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강원재단은 구상권 소송이 확정되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 사이 손해금의 경우 당초에 적용하였던 8% 이자율을 「소송특례법」상 이자율인 12%로 조정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구상권 소송 관련 손해금 산정·청구 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구상권 소송 관련 손해금 산정·청구 시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하는 일 등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Ⅲ-3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법령 등 관련 근거

「지방계약법」 제9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르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sup>11)</sup>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2020.12월 채용대행 업체[TTTT(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일반직 6급<sup>12)</sup> 직원 6명을 채용하였다. 용역계약 현황은 아래 [표 4] 와 같다.

11)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심사 과정을 거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12) 1급: 본부장, 2급: 부장, 3급: 부장, 4급: 차장, 5급: 대리·과장, 6급: 계장(사원)

< [표 4] 용역계약체결 현황 >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약금액(원)	계약방식
신규직원 채용대행 용역	'20.12.26~'21.1.25	TTTT(주) (대표: ZZZ)	29,823,200	수의계약 (근거: 여성기업 <sup>13)</sup> )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강원재단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여성기업을 근거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체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업체가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인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영지원부 KKK KK<sup>14)</sup>(이하 “KKK KK”이라 한다.)은 위 용역이 수의계약 가능 범위인 2,000만 원을 초과함에 따라 업체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업체(TTTT) 대표자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일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여 위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5)16)</sup>

그 결과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수의계약 상대방에게는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여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였으며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

13) KKK KK은 여성기업을 근거로 “TTTT(주)”와 수의계약 하겠다고 공문(‘20.11.10.)을 기안하고 “TTTT(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14) KKK KK 경영지원부 근무기간(‘20.7.1. ~ ’21.7.31.) / 現 A팀 AA으로 근무 중

15) KKK KK은 계약체결 당시 업체 대표가 여성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대표자 성별이 여성임을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

16) 이에, 위 “TTTT(주)”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가능한 업체인지 중소기업부 소관부서(정책총괄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위 업체는 중소기업부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업체임을 확인함.

**【관계자 의견】**

강원재단 KKK KK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대한 처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KKK KK (주의)

### Ⅲ-4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 한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강원재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에 대한 복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 2. 법령 등 관련 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강원재단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회의 등에서 강의·강연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sup>17)</sup> 이내에 요청인·요청사유·장소 및 사례금 등을 포함한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 임직원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pp대학교 등 총 58개 기관에서 188회(27명)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으로 계 37,854,120원을 수령하였다.

강원재단은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요청사유·장소 및 대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동해지점 ccc ccc 등 3명은 위 기간 동안 총 45회에 걸쳐 외부강의

17) 청탁금지법이 개정('19.11.26.)되기 전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

등을 하고서도 아래 [표 5] “외부강의 등 지연신고 현황”과 같이 그 사실을 7회에 걸쳐 최단 4일에서 최장 28일까지 지연하여 신고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5] 외부강의 등 지연신고 현황 >

소속	이름	연도	기관명	활동내용	외부강의 종료일	외부강의 신고		사례금 (원)
						신고일	지연일수	
신용보증부	aa	2017	신협중앙회	강의	'17.5.25	'17.6.2	6	0
경영관리본부	bbb	2019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심의	'19.6.13	'19.7.1	16	100,000
경영관리본부	bbb	2019	강원랜드 희망재단	심의	'19.6.25	'19.7.2	5	392,160
경영관리본부	bbb	2019	춘천시청	심의	'19.7.09	'19.7.15	4	70,000
경영관리본부	bbb	2019	원주투데이	기고	'20.11.16	'20.12.11	15	50,000
동해지점	ccc	202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심사	'21.11.19	'21.12.27	28	100,000
동해지점	ccc	2022	인천신용보증재단	평가	'22.4.8	'22.4.25	7	100,000

주: 청탁금지법 개정('19.11.26.)되기 전의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를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산출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강원재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지연하여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ccc ccc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후 지연하여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ccc cccc (주의)<sup>18)</sup>

18) aa aa, bbb bbb의 경우 '17.11.30. 및 '21.1.15.에 각각 퇴사하여 처분에서 제외함.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 한다.)은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 등 여비를 지급<sup>19)</sup>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 「여비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출장 관련 ①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1을 지급하고, ②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③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직원의 경우 출장일수당 20,000원(임원·본부장: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경영지원부)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642건의 출장 건에 대해 총 207,091,240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강원재단은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비 및 교통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원이 출장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출장일수당 20,000원을 초과하여 식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아래 [표 6] 와 같이 fff ff 등 10명의 경우 공용차량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일비를 감액(2분의1)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았고, ddd ddd의 경우에도 공용차량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를 지급하였으며, eee ee 등 3명의 경우에는 직원 자격으

19) 임직원(출장자)이 출장비를 청구하면 경영지원부에서 이를 검토·정산 후 출장비를 지급함.

로 출장(1일) 업무를 수행하여 식비로 각각 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총 166,720원의 출장비를 「여비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6] 출장비 과지급 내역 >

연번	출장자	출장일	출장기간	정당 금액(a)	실제지급 금액(b)	초과지급 금액(b-a)	비고
1	fff	'17.2.9~10	2일	20,000원	40,000원	20,000원	※ 일비 관련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일비×1/2)
2	ddd	'17.2.9~10	2일	20,000원	40,000원	20,000원	
3	ggg	'19.12.18~19	2일	20,000원	40,000원	20,000원	
4	hhh	'22.9.6	2일	20,000원	40,000원	20,000원	
5	iii	'18.6.20	1일	10,000원	20,000원	10,000원	
6	jjj	'19.1.18	1일	10,000원	20,000원	10,000원	
7	kkk	'20.4.22	1일	10,000원	20,000원	10,000원	
8	jjj	'21.2.5	1일	10,000원	20,000원	10,000원	
9	lll	'22.8.17	1일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	mmm	'22.9.6	1일	10,000원	20,000원	10,000원	
11	ddd	'17.9.26	1일	0원	6,800원	6,800원	※ 교통비 관련 공용차량 이용 시(미지급)
12	nnn	'17.9.22	1일	20,000원	26,640원	6,640원	※ 식비 관련 직원 출장 시 (출장일수당: 20,000원)
13	ooo	'17.11.28	1일	20,000원	26,640원	6,640원	
14	hhh	'21.7.8	1일	20,000원	26,640원	6,640원	
총 계				200,000원	366,720원	166,720원	-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강원재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출장비 등이 과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회수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출장비 등 경비 지급 시 과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과지급된 출장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Ⅲ-6

##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부적정

###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 한다.)은 「보증채무이행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채무자)이 금융기관(채권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대위변제<sup>20)</sup>한다.

###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 「보증채무이행심사 표준처리기간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청구”<sup>21)</sup>를 신청하였을 때는 이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재단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신속, 정확하게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신용보증, 특례보증 등을 운용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보증사고 등의 사유로 총 6,147건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받아 접수하였다.

강원재단 「운용기준」에 따르면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초과이자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아래 [표 7] 와 같이 2018년도의 경우 총 1,012건을 접수하여 8건(0.79%)을, 2019년도의 경우에는 총 1,246건을 접수하여 19건(1.52%)을

20) (대위변제) 보증사고 발생 시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를 갚아주는 것

21) 보증사고 발생 시 금융기관이 재단에 신청

지연 처리하는 등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39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특히, 위 39건 중 약 51%에 해당하는 20건을 ppp pp(qqqqq)이 최단 13일에서 최장 33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9건은 qq q 등 7명이 최단 13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지연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7] “보증채무이행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 >

구분	총 접수(건)	기한 내 처리(건)	지연 처리		초과이자(원)
			지연 처리(건)	최소(일)~최대(일)	
2017년	948	947	1	34	20,214
2018년	1,012	1,004	8	13~23	100,790
2019년	1,246	1,227	19	13~30	361,344
2020년	1,193	1,186	7	13~40	185,931
2022.9월	655	651	4	13	57,362
총 계	5,054	5,015	39	-	725,641

주: 2021년도에는 지연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증채무이행청구”를 접수하여 기한 내 처리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725,641원의 초과이자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강원재단에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관계기관 및 관계자 의견】**

강원재단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보증채무이행 등을 지연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ppp ppppp 등 업무관련자들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보증채무이행 등을 지연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지연처리 횟수가 10회 이상인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ppp ppppp (경고)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고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신용보증 등 각종 보증을 운용하면서 보증의 이용대가로 보증료를 받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보증료 납부기일 내에 보증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 다음날 이후의 보증료를 보증이용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재단 「복무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신속 정확하게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신용·특례보증 등 보증을 운용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 까지 채무자에게 받은 보증료는 총 82,762,529,800원이고, 이 중 채무조기상환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증료 환급액은 6,642,889,350원이다.

강원재단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에 따르면 채무조기상환 시에는 잔여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증료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아래 [표 8] 와 같이 위 환급액 총 6,642,889,350원 중 6,246,962,453원만 보증 해지 이익업일에 환급하고, 387,600,364원은 보증 해지일로부터 최장 1,121일이 지나 환급하였다.

더욱이 8,326,533원은 [별표1] “채무자별 보증료 미환급 명세”와 같이 보증해지일로부터 12일 내지 1,600여일이 지난 감사일 현재(2022년 11월)까지도 환급하

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8] 보증료 지연 환급 및 미환급 현황 >

(단위: 원)

구분	환급 보증료 발생액	보증료 환급		미환급 보증료
		보증 해지 익일 환급	지연 환급	
2017년	771,687,160	725,496,290	46,190,870	0
2018년	872,790,790	823,431,776	49,301,834	57,180
2019년	979,096,380	910,951,355	67,883,345	261,680
2020년	1,318,366,630	1,272,616,935	45,648,875	100,820
2021년	1,443,228,140	1,361,412,106	81,376,474	439,560
2022.9월	1,257,720,250	1,153,053,991	97,198,966	7,467,293
합 계	6,642,889,350	6,246,962,453	387,600,364	8,326,533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증료를 적시에 환급하지 않거나 미환급(8,326,533원) 상태로 방치하여 보증신청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서비스 신뢰성 및 만족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강원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환급대상 보증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급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환급대상 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별표1] “채무자별 보증료 미환급 명세”의 “미환급 보증료”에 대해서는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 등에 따라 환급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별표1]

< 채무자별 보증료 미환급 명세('22.9월말 기준) >

(단위: 원)

연번	업체명	보증 개시일	보증 해지일(A)	보증 만료일(B)	환급 초과일(B-A)	미환급 보증료
1		2013-09-17	2018-07-03	2018-09-13	1549	6,590
2		2017-05-12	2018-09-22	2019-05-10	1468	50,590
3		2015-07-27	2019-09-12	2020-07-24	1113	261,680
4		2020-04-27	2020-12-30	2021-04-23	638	100,820
5		2015-06-24	2021-03-26	2021-06-11	552	80,130
6		2016-11-21	2021-08-20	2021-11-19	405	218,020
7		2014-03-07	2021-09-08	2022-02-25	386	141,410
8		2020-04-13	2022-02-11	2022-04-13	230	38,210
9		2020-03-17	2022-02-19	2023-02-17	222	50,860
10		2020-06-04	2022-03-05	2023-06-02	208	174,520
11		2020-06-08	2022-03-24	2025-06-02	189	324,850
12		2021-08-25	2022-03-26	2026-08-20	187	146,950
13		2019-03-27	2022-04-12	2024-03-21	170	168,660
14		2019-06-07	2022-05-10	2022-06-03	142	37,240
15		2019-10-04	2022-05-25	2022-09-29	127	84,160
16		2013-07-19	2022-06-17	2022-07-08	104	5,230
17		2018-09-20	2022-06-21	2023-09-13	100	243,511
18		2020-04-08	2022-06-28	2023-04-07	93	210,080
19		2020-04-28	2022-07-04	2023-04-13	87	316,960
20		2011-07-04	2022-07-07	2023-06-23	84	32,310
21		2020-04-16	2022-07-14	2023-04-13	77	126,670
22		2018-02-06	2022-07-21	2023-01-27	70	94,190
23		2020-07-28	2022-07-21	2022-07-22	70	1,110
24		2009-08-19	2022-08-03	2022-08-12	57	1,440

연번	업체명	보증 개시일	보증 해지일(A)	보증 만료일(B)	환급 초과일(B-A)	미환급 보증료
25		2020-05-07	2022-08-06	2023-05-04	54	202,510
26		2022-06-13	2022-08-09	2023-06-12	51	219,300
27		2017-10-10	2022-08-19	2022-09-16	41	11,640
28		2022-01-24	2022-08-20	2023-01-20	40	271,892
29		2020-08-27	2022-08-25	2022-08-25	35	370
30		2016-09-07	2022-08-26	2022-08-26	34	1,300
31		2019-04-26	2022-08-30	2023-04-21	30	149,680
32		2022-03-04	2022-08-31	2027-03-02	29	1,074,620
33		2020-09-25	2022-09-01	2022-09-22	28	8,190
34		2022-04-27	2022-09-17	2032-04-23	12	3,470,840
<b>총 계</b>						<b>8,326,533</b>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 한다.)은 「보증취급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 [그림 3] 와 같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그림 3] 신용보증승인 절차 >



자료 :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 「보증취급요령」(이하 “보증취급요령”이라 한다.) 제 12조에 따르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기업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요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소액심사는 7일, 표준심사 및 정밀심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은 신속하게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보증취급요령」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위 표준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휴대폰 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신청기업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아래 [표 9] 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총 90,361건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하였다.

< [표 9] 연도별 신용보증신청서 접수 현황 >

(단위: 건)

구분	소액심사	표준 및 정밀심사	소계
2017년	8,834	13	8,847
2018년	9,645	76	9,721
2019년	12,523	41	12,564
2020년	26,970	17	26,987
2021년	12,770	10	12,780
2022.9월	19,454	8	19,462
총계	90,196	165	90,361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강원재단 「보증취급요령」에 따르면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는 표준처리기한(소액: 7일, 표준·정밀: 1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하고,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신청자)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신용보증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준·정밀심사는 처리 기한(10일) 내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소액심사는 아래 [표 10] 와 같이 총 113건에 대해 처리기한(7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0] 신용보증신청서 접수 지연처리 현황 >

초과일	8일 이상 10일 이하	11일 이상 15일 이하	16일 이상 20일 이하	21일 이상	총계
건수	47	52	9	5	113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위 113건의 지연 처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rrr rr 등 34명의 직원이 최소 1건에서 최대 9건에 대해 최단 1일에서 최장 19일까지 지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신청서를 접수 받고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상공인 등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rrr rr 등 34명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신용보증신청 지연처리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기업 불편을 초래하였다.

### 【관계기관 의견】

강원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보증취급 시 표준처리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신용보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sup>22)</sup>

22) 이 건의 경우 업무를 지연 처리한 직원이 특정되어 개인에 대해 처분(주의 등)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7.1월부터 2022.9월까지 이 건 관련 관련자가 rrr rr 등 총 34명으로 확인되는 등 개인 처분에 대한 실익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관주의 처분함.

## III-9

## 제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미흡

###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라고 한다.)은 「제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에 따라 대위변제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sup>23)</sup> 등에 대해 재기지원 가능성을 평가하여 제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 「제도전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이하 “취급기준”이라 한다.)의 제5호에 따르면 보증취급 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현장조사를 1회 실시하여, 부실징후 예방 및 보증부대출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운용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5개 업체에 100,000,000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강원재단은 「취급기준」에 따라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취급한 후에는 1년 이내에 사업장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고 한다.)를 통해 부실징후 예방 및 보증부대출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위 5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표”를 징구하는 등 「취급기준」에 부합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ssssss”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이후 아래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면책을 확정 받거나 기업·개인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기업), 또는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완료자 포함)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표 11] 와 같이 보증실행일로부터 30개월 내지 36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 (2022년 11월)까지도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11] “제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현황 >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보증개시일	보증만료일	보증금액	보증잔액	현장조사일
1		'17.3.27	'18.3.6	10,000,000	0	'17.12.19
2		'17.6.28	'21.6.25	20,000,000	0	'17.9.7
3		'17.11.21	'23.11.17	20,000,000	20,000,000	'18.10.25
4		'19.10.30	'23.10.20	30,000,000	30,000,000	미실시 <sup>24)</sup>
5		'20.4.16	'25.4.9	20,000,000	19,444,425	미실시 <sup>25)</sup>
총 계				100,000,000	69,444,425	-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보증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위 보증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 【관계자 의견】

울산재단은 앞으로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에 대한 현장실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에 대한 현장실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현장실사를 누락한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KKK KK, qq q (주의)

24) 사후관리담당자: mmm mm, qq q

25) 사후관리담당자: ttt tt('22.8.23. 퇴사), uuu uu('22.4.6. 퇴사)

## III-10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 관리 소홀

###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은 채무자가 구상금을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강제집행 등을 보류하는 혜택<sup>26)</sup>을 제공한다.

###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 「채무감면규정」 제9조에 따르면 상환예정금액에 따라 최대 8년 이내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전결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기간의 2배 범위 내에서 약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채무감면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구상권회수를 위한 채권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405건의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유지 중 이다.

강원재단은 「채무감면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도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이익<sup>27)</sup>을 상실시켜야 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위 405건의 분할상환 약정 계약 중 “vvvvvvvv(대표: vvv)” 등 30건(업체)은 아래 [별표2] “분할상환 약정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26) 채무관계자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담보권 실행,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을 보류하고, 신용관리정보(채무불이행정보)를 조기해제 할 수 있다.

27) (기한이익) 법률 행위의 기한에 의해 당사자가 얻는 이익



대상 내역”과 같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도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아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하는데도 감사일 현재(2022년 11월)까지 이를 상실시키지 아니한 채 채권보전조치(강제집행)를 보류하는 등 기한이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 채무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강원재단은 앞으로 분할상환 약정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채무감면규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등 적절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분할상환 약정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채무감면규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약정금액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보전조치 등을 통해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별표2]

< 분할상환 약정 위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대상 내역('22.10월말 기준) >

(단위: 원)

연번	채무자	약정일	약정금액 (원)	약정 횟수	연체 횟수	연체일 수	약정 미회수 금액(원) <sup>2)8)</sup>
1		2018-10-24	5,816,066	31	2	588	197,729
2		2021-10-20	5,548,560	28	12	343	5,348,560
3		2020-05-15	4,346,000	22	4	323	746,000
4		2021-04-20	13,323,662	112	8	227	11,953,662
5		2019-07-22	3,457,448	35	3	220	207,448
6		2021-09-27	10,737,569	54	7	202	9,537,569
7		2018-01-25	59,508,558	95	7	191	31,278,558
8		2022-03-17	10,509,395	57	7	185	9,449,395
9		2021-04-21	26,548,023	72	7	185	19,058,023
10		2020-09-11	9,927,983	25	5	176	1,000,000
11		2021-09-24	5,814,032	12	4	167	1,814,032
12		2021-11-24	7,537,597	26	6	157	5,727,597
13		2021-03-09	10,184,211	58	6	157	7,384,211
14		2020-01-19	5,273,788	44	6	156	2,573,788
15		2022-04-04	20,174,300	41	5	146	19,174,300
16		2021-08-09	15,427,078	78	5	141	13,627,078
17		2021-07-30	20,932,145	140	5	140	19,432,145
18		2019-09-23	18,754,927	66	5	136	7,554,927
19		2021-03-23	8,995,143	29	5	133	3,540,143
20		2022-03-30	6,600,000	44	5	126	6,150,000
21		2020-06-24	9,427,563	48	5	126	4,267,563
22		2022-03-04	9,106,051	46	4	120	8,506,051
23		2021-04-05	6,198,989	62	4	115	4,698,989
24		2021-12-13	19,990,313	67	4	115	18,190,313

연번	채무자	약정일	약정금액 (원)	약정 회수	연체 회수	연체일 수	약정 미회수 금액(원) <sup>28)</sup>
25		2022-04-13	10,371,096	70	4	111	9,921,096
26		2021-09-24	7,263,057	73	4	106	6,363,057
27		2021-11-19	5,755,097	29	4	106	4,155,097
28		2021-09-06	6,331,573	26	4	101	3,781,573
29		2022-04-25	19,343,842	49	4	101	18,143,842
30		2022-03-28	20,320,410	51	4	100	18,620,410
총 계							272,403,156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 III-11 배당금 지연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

####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라고 한다.)은 채무불이행 등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권<sup>29)</sup>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sup>30)</sup>하고, 이후 법원이 가압류 부동산 등을 경매·매각한 후 배당금(공탁금)<sup>31)</sup>을 배정하여 배당기일<sup>32)</sup>을 통보하면 재단은 법원에 출석하여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구상채권<sup>33)</sup>을 회수하고 있다.

#### 2. 법령 등 관련 근거

##### < 배당금 손해금 전가 관련 >

「대법원 2012다65874(2014.9.4.선고)」 판례에 따르면 배당절차에 따라 배정된 배당금의 채무변제효력일은 통상 배당표가 확정되었을 때(배당일)이고, 가압류권자로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확정일이 공탁사유 소멸일로써 변제효력일이 된다.

##### < 배당금 이자 수입처리 관련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이하 “보관금처리지침”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경매절차의 배당 시 배당기일 이후에 배당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이자는 배당받을 자(재단)에게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

28) 분할상환약정 의무 위반 관련 기한이익이 상실 처리된 후에는 약정 당시 채무감면(손해금 감면 등) 혜택이 취소되면서 실제 총 채무액은 더 증가될 수 있음

29) (구상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0)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31) (배당금) 채무자의 부동산 등을 경매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금전

32) (배당기일) 강제집행 후 배당실시를 위하여 법원이 지정한 기일을 말하며, 부동산 또는 선박의 강제 경매에 있어서는 배당기일은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임

33) (구상채권) 보증재단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

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탁금(배당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의 201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배당금 지연수령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금은 7,202,909원이고, 이자수입은 169,316원이다.

강원재단은 「대법원 2012다65874(2014.9.4.선고)」 판례 등에 따라 배당기일(가압류권자는 소송확정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수령 주체인 재단에 있으므로 배당기일부터 수령일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금처리지침」에 따르면 배당기일 초과수령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구상금회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www(주)(대표: www)” 등 27개 업체에 대해 배당기일을 초과<sup>34)</sup>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금 7,202,909원을 [별표3]의 “지연손해금 전가 및 공탁금이자 오처리 명세”와 같이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배당기일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배당기일부터 수령일 사이에 공탁금 이자<sup>35)</sup>가 발생하고, 이는 채권자인 재단의 이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공탁금 이자수입 169,316원을 [별표3]의 “지연손해금 전가 및 공탁금이자 오처리 명세”와 같이 채무자의 구상금회수로 처리<sup>36)</sup>하였다.

그 결과 손해금(7,202,909원)을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한편, 재단의 자산(공탁금이자수입: 169,316원)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시켜

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관계기관 의견】

강원재단은 위 감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배당금 관련 이자수입을 채무자 구상권회수에 사용하거나 배당금을 지연 수령하였을 경우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배당금 관련 이자수입을 채무자 구상권회수에 사용하거나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손해금에 대해서는 공탁금 이자수입으로 처리된 구상권회수 내역을 감안하여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34) 강원재단은 가압류권자 등의 배당으로써 소송확정 후 확정증명서 발급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하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변제일(변제효력일)은 소송확정일자로 처리해야 함.

35)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로 한다.

36) 공탁금이자수입을 구상금회수로 처리할 경우 처리한 금액만큼 채무자의 채무가 탕감됨.

[별표3]

< 지연손해금 전가 및 공탁금이자 오처리 명세('22.10월 말 기준) >

(단위: 원)

연번	업체명	배당일자 (변제효력일)	배당 금액	공탁금 이자	배당금 수량일	초과수 량일수	고객전가 손해금 <sup>37)</sup>
1		2018-10-05	7,377,315	61,393	2021-04-21	929	2,839,956
2		2021-11-13	24,133,150	23,601	2022-09-29	320	2,189,737
3		2020-03-24	4,328,595	4,026	2020-06-29	97	172,094
4		2020-04-29	12,700,372	8,159	2020-07-15	77	301,084
5		2017-07-25	11,754,153	5,924	2017-09-22	59	259,391
6		2019-03-26	1,292,255	630	2019-05-16	51	24,191
7		2021-09-03	29,079,483	7,249	2021-10-18	45	424,077
8		2020-02-27	2,744,686	894	2020-04-01	34	29,679
9		2017-12-28	1,219,170	106	2018-01-29	32	11,367
10		2018-05-31	5,323,892	2,771	2018-06-26	26	49,654
11		2017-12-05	1,252,087	475	2017-12-26	21	6,682
12		2019-04-30	503,856	92	2019-05-21	21	2,205
13		2021-06-23	267,923	17	2021-07-09	16	1,344
14		2018-04-30	20,976,571	517	2018-05-14	14	98,207
15		2021-05-12	3,670,810	140	2021-05-26	14	16,232
16		2021-09-02	22,440,451	793	2021-09-15	13	92,709
17		2020-12-16	11,177,394	367	2020-12-28	12	44,052
18		2018-12-19	3,206,531	425	2018-12-27	8	10,028
19		2018-06-14	96,533,584	33,169	2018-06-22	8	317,480
20		2018-06-14	50,152,692	17,229	2018-06-22	8	216,393
21		2018-04-05	2,170,156	206	2018-04-12	7	5,516
22		2020-12-21	3,517,559	67	2020-12-28	7	8,065
23		2020-12-16	22,378,238	367	2020-12-22	6	45,185
24		2022-04-28	1,656,001	18	2022-05-02	4	1,670

연번	업체명	배당일자 (변제효력일)	배당 금액	공탁금 이자	배당금 수량일	초과수 량일수	고객전가 손해금 <sup>37)</sup>
25		2017-09-04	13,077,855	143	2017-09-08	4	20,707
26		2022-10-19	6,411,284	314	2022-10-21	2	7,024
27		2019-04-15	11,730,563	224	2019-04-17	2	8,180
총 계		-	-	169,316	-	-	7,202,909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37) 강원재단의 배당금 지연수량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채무자에게 전가한 금액

\* (산출방식) 고객전가 손해금 = 원금회수액×손해금율×회수지연일수÷365일

1. 업무 개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강원재단”이라고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증만료기한 도래 시 채무자(소상공인 등)의 요청에 따라 보증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강원재단의 「보증료 등의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이라고 한다.) 제6조 등에 따르면 당초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증만료기한을 연장할 때에도 최초계약당시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강원재단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74,619건 중 23,376건의 보증에 대해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강원재단 「운용기준」에 따르면 당초 “고정보증료율”로 계약한 보증의 만료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계약당시 보증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강원재단은 아래 [표 12] “보증기한연장 관련 보증료 부담 수납 현황”과 같이 xxxx 등 12개 업체의 경우 당초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만료기한연장 시에도 최초계약당시 보증료율(0.8%)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임의로 높게 적용하여 보증료(0.9~1.5%)를

산정·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38)</sup>

< [표 12] 보증기한연장 관련 보증료 부담 수납 현황('22.9월말 기준) >

(단위: %, 원)

연번	업체명	보증금액	보증기한	기한연장	당초 보증료율	오적용 보증료율	초과수령 보증료
1		9,000,000	'22.2.24	'23.2.23	0.8	1.5	62,650
2		13,500,000	'22.2.24	'23.2.24	0.8	1.1	40,640
3		42,500,000	'22.3.2	'23.3.2	0.8	1.1	127,960
4		34,000,000	'22.3.2	'23.3.2	0.8	1.3	170,180
5		42,500,000	'22.3.8	'23.3.8	0.8	0.9	42,610
6		42,500,000	'22.3.10	'23.3.10	0.8	1.1	127,960
7		34,000,000	'22.3.11	'23.3.10	0.8	1.1	101,900
8		17,000,000	'22.3.8	'23.3.8	0.8	1.4	102,090
9		20,400,000	'22.7.1	'23.6.30	0.8	1.3	101,720
10		15,300,000	'22.7.8	'23.7.7	0.8	1.3	76,290
11		38,000,000	'22.4.29	'23.4.28	0.8	1.2	151,170
12		47,500,000	'22.5.11	'23.5.11	0.8	1.2	189,730
총 계							1,294,900

자료: 강원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채무자(소상공인 등)로부터 총 1,294,900원의 보증료를 과도하게 수납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강원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운용기준」에 따라 보증료를 정확히 수납함과 아울러 과도하게 수납한 보증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급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8) 강원재단은 일부 보증만료기한연장 건에 대해 업무상 착오로 “고정보증료율”이 아닌 “표준(기준)보증료율”을 적용한 것 같다고 하면서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

**【조치할 사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운용기준」에 따라 보증료를 정확히 수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과도하게 수납된 보증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환급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IV. 처분 요약**

□ 강원신용보증재단

○ 처분요구: 경고 2건(개인 1, 기관 1), 주의 6건(개인 5, 기관 1), 시정 5건

연번	건명	관계부서	처분요구		조치 기한
			기관	개인	
1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	경영지원부	-	주의	'23.3월
2	구상권 소송에 따른 손해금 산정 부적정	재기지원부	경고	-	'23.3월
3	수익계약 체결 부적정	경영지원부	-	주의	'23.3월
4	외부강의 등 신고 부적정	감사부	-	주의	'23.3월
5	출장비 지급 부적정	경영지원부	시정요구	-	'23.3월
6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부적정	재기지원부	-	경고	'23.3월
7	보증료 환급업무 부적정	보증지원부	시정요구	-	'23.3월
8	보증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보증지원부	주의	-	'23.3월
9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미흡	보증지원부	-	주의	'23.3월
10	구상금 분할상환 약정 관리 소홀	재기지원부	시정요구	-	'23.3월
11	배당금 지연수령 관련 손해금 전가 등 부적정	재기지원부	시정요구	-	'23.3월
12	보증만료기한연장 관련 보증료 산정 부적정	보증지원부	시정요구	-	'23.3월

○ 신분상조치: 경고 1건, 주의 5건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	-	-	기본재산 운영 관련
2				○	-	-	수익계약 체결 관련
3				○	-	-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4				-	○	-	보증채무이행 업무처리 관련
5				○	-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관련
6				○	-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후관리 관련